

#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603 |
|----------|------|

2017년 2월 20일  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년 2월 6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2월 7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
(2017년 2월 20일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(1) 현재 부르는 명칭이 “서울시설공단”인데 반해, 조례상 명칭인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으로 공문서, 계약서 등에 표기하고 있어, 서로 다른 기관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며,
  - 현재 각종 간판, 홈페이지, 홍보동영상, 안내문, 명함 등이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표기되어 있어 사명 변경 시에도 관련 비용 미발생
- (2) 전국 시설관리공단 등의 명칭이 간결화 되어가는 추세임
  - 부산시설공단, 울산시설공단, 구미시설공단, 수원시설공단 등
- (3) 또한,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란 사명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공단을 공무원 조직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, 공단의 관료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기업성을 부각 시킬 필요가 있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골자

- (1)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변경(제1조, 제2조, 제9조제2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협의사항
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규제사항 없음
- 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 설치) : 해당사항 없음
- 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 등) : 해당사항 없음
- 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평가 제외 대상
- 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 : 원안 동의
- (6) 갈등조정담당관(공공갈등진단) : 원안 동의

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16.11.10.~11.22)결과 : 의견 없음
- (2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별도 붙임
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도 붙임

4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 법인명인 “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(이하 ‘공단’)”과 일반명인 “서울시설공단”이 혼용됨에 따라 시민 혼란방지 및 명칭 간결화를 위해 조례상 공식명칭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- 지금까지의 공단 명칭 변경 이력을 살펴보면, 1983년 해당 조례 제정 당시 ‘서울시설관리공단’에서 1993년에 ‘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’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공식명칭으로 하고 있으며,
- 2005년 12월부터 공단 이사장방침(제628호, ‘05.12.12.)에 따라 공문서, 등기 등에 사용하는 공식명칭(법인명)은 “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”으로, 각종 홍보물 등 그 외 사용명칭(일반명)은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이원화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.

| 법인명(Corporation Name)  | 일반명(Communication Name)  |
|--|--|
|   |  |
| <p><b>■ 서울시설공단 CI</b></p> <p>공단의 명칭은 법인명(Corporation Name)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 네임(Communication Name)으로 분류 사용합니다. 법적인 주체를 명확히 표현할때는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울시설공단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상징색은 절음과 역동, 발전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'Blue'입니다. 여기에 뉴웨이브(New Wave)와 행복, 즐거움의 바람을 상징하는 심볼을 적용함으로써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끝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혁신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공단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sisul.or.kr/">http://www.sisul.or.kr/</a>) 발췌&gt;</p> |  |

- 먼저, 명칭을 변경하게 될 경우 기관의 성격, 주된 사업 등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, “서울시설공단”은 지방자치단체(서울), 업무(시설), 법률상 형태(공단)의 필요한 사항을 간결하게 모두 나타내고 있음.
- 또한 타 광역시의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공단명칭을 살펴보면, 별도의 시설관리 공단이 없는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(부산, 대구, 인천, 대전, 울산) 중 부산, 대구, 울산광역시는 이미 법인명을 ‘시설공단’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어 사명을 간결화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음([표] 참조).

[표] 서울시 및 광역자치단체 시설 관리 공단 법인명칭

| 연번 | 지역 | 법인명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|
|----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1  | 서울 |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|                 |
| 2  | 부산 | 부산시설공단      | 2010.1.1. 사명변경  |
| 3  | 대구 | 대구시설공단      | 2017.1.1. 사명변경  |
| 4  | 인천 |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|                 |
| 5  | 광주 | -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6  | 대전 |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|                 |
| 7  | 울산 | 울산시설공단      | 2015.10.1. 사명변경 |

- 마지막으로 명칭 변경에 수반되는 비용을 살펴보면, 공단의 전수조사 결과 대부분의 대외 홍보매체(홈페이지, 홍보동영상, 안내문, 명함 등)에 이미 ‘서울시설공단’으로 표기되어 있어 청사 전면 간판 교체 등을 위해 약 2천 6백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나타나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([표] 참조).

[표] 공단 사명변경에 따른 소요예산

| 연번  | 부서명      | 교체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요예산       |
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   | 총무처      | 청사 각층 사무실 입구 안내판 13개소           | 104,000    |
| 2   |          | 청사 전면 간판 1개소                    | 20,000,000 |
| 3   |          | 청사 출입구 공단 수상 안내판 1개소            | 520,000    |
| 4   |          | 청사 전면 화단 기념비석 1개소(철거비용)         | 1,980,000  |
| 5   |          | 청사 주변 도로점용 표지판 3개소              | 144,000    |
| 6   | 추모시설 운영처 | 승화원 내 표지판 5개소                   | 1,000,000  |
| 7   |          | 묘지관리소 15개소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8   | 도로시설처    | 홍지문터널 통합환기소 옥상 운전자를 위한 안내표지판1개소 | 1,500,000  |
| 9   |          | 홍지문터널 제설자재보관함 4개                | 1,200,000  |
| 합 계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6,448,000 |

- 따라서 공식명칭(법인명)과 부르는 명칭(일반명)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이 부르기 쉽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간결화된 명칭으로 통일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##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,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 중 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명의를 이를 서울시설공단의 명의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설공단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의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6항의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
③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을 각각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
④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업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의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
⑤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
⑥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의 “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
⑦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9호마목의 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
- ⑧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4조제1항의 “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- ⑨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3조제4항의 “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- ⑩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4조제1항의 “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- ⑪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5조제2항제4호다목의 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- ⑫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47조제1항의 “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시설공단”으로 한다.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u>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  | <u>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  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에 따라 <u>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</u> 을 설립하고,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<br>----- <u>서울시설공단</u> -----<br>-----<br>----- <u>필요</u> -----. |
| 제2조(법인격) <u>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</u> 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   | 제2조(법인격) <u>서울시설공단</u> -----<br>-----.  |
| 제9조(이사) ① (생략)  | 제9조(이사) ① (현행과 같음)  |
| ②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.  | ② -----<br>-----.   |
| 1. <u>시설관리공단</u> 의 업무 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명  | 1. <u>서울시설공단</u> -----<br>-----   |
| 2. (생략)   | 2. (현행과 같음)   |
| ③ ~ ⑤ (생략)  |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 |